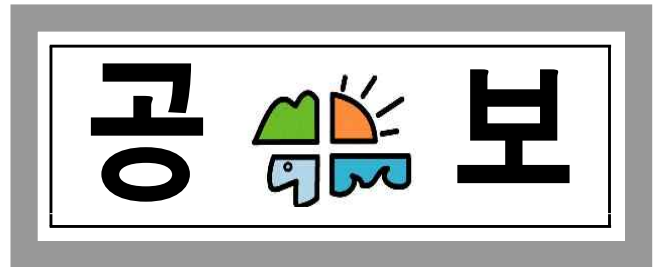


#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         |
|---|---------|
| 선 | 기 관 의 장 |
| 람 |         |



제747호 2013년 1월 11일(금)

## 조 례

- 속초시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 2
- 속초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 5

## 공 고

- 속초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입법예고..... 25
- 2013년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고..... 31

|     |  |  |  |  |  |  |  |  |  |
|-----|--|--|--|--|--|--|--|--|--|
| 회 란 |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223, FAX : 639-2106)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속 초 시 장 채 용 생 인

2013년 1월 11일

속초시조례 제2313호

### 속초시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

속초시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 속초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범위는 제3조의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대직자로 한다.

제3조(보험가입 대상)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감 관련업무
2. 본인서명사실확인 관련업무
3. 주민등록 관련업무
4. 여권발급 관련업무
5. 가족관계등록 관련업무
6.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련업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업무

제4조(보험의 가입)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 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감 관련업무 : 3억원 이하
2. 본인서명사실확인 관련업무 : 10억원 이하
3. 주민등록 관련업무 : 2억원 이하
4. 여권발급 관련업무 : 1억원 이하
5. 가족관계등록 관련업무 : 1억원 이하
6.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련업무 : 1억원 이하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업무 : 1억원 이하

제5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가입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보험가입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험가입 관리대장

| 보 험<br>공제명 | 보 험<br>회사명 | 가입(체결)<br>방 식 | 가입<br>인원 | 보험한도<br>금 액 | 보험보증<br>기 간 | 보 험<br>가입일 | 보 험<br>만기일 | 보험료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속 초 시 장 채 용 생 인

2013년 1월 11일

속초시조례 제2314호

### 속초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

속초시 수도급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속초시 수도급수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속초시의 수도요금 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이하의 장치"라 함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빗물이용시설"이란 빗물을 모아 생활용수, 조경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8. "구경별 정액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9. "산업용수"란 농공단지에 산업용으로 공급되는 용수를 말한다.
10.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속초시(이하 "시" 한다)의 관할구역 중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 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 제2장 급수공사의 비용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현장조사, 측량, 수리계산 수수료 등)을 미래 내며 단독주택에 한정하여 건축허가와 동시에 급수공사를 승인할 때의 설계수수료는 공사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급수공사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 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배관 기능사 2급이상 자격취득자(다만,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의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면허 소지자

② 시장은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15,94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급수공사대행업자의 자격과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 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주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 공사신청인이 부담하는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및 설계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미래 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시설 분담금)** ① 전용급수장치, 보조급수장치와 사설 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 (급수관의 구경 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전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 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다만,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총 산정액의 50퍼센트를 부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설, 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콘도미니엄과 연수원, 숙박업(50실이상)시설의 시설분담금은 객실을 1수용가로 하여 구분산정하며 총산정액의 100퍼센트를 부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하

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 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시공에 관하여는 제8조 를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흡수정 이하의 설비 설치)**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 사용자 등은 흡수정이하의 설비공사에 있어서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수도공사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장 급수

**제19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로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건축물은 검침 및 관리가 용이한 대지경계선의 최인근지점으로 공지 상에 설치
2.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관리가 용이한 단지 안에 설치하되 저수조를 경유 하기 전의 공지 상에 설치

**제20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의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5. 건물 등의 매매로 소유주가 변경되었을 때

②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 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 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급수의 판매 금지)** ①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공용 급수설비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 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22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 로서 옥내 누수예방, 계량기 및 관련 시설물 손상방지, 상수도의 오염방지 등 원활한 급수가 유지되도록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 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원인자 부담으로 수도계량기 위치변경공 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이 설치한 급수설비 중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 관리는 시장의 책임으로 하고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 관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 으로 한다. 다만, 대지경계선 밖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대지경계선으로부

터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 및 계량기 보호통에 대한 관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하고, 수도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 그 계량기의 점검은 시장이 한다.

④ 수도사용자 등은 자신이 관리하는 수도 급수설비에 대하여 훼손, 망실, 변조 등의 사유 발생시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하는 급수설비 등에서 발생한 누수 등 손해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수도사용자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누수발생시 계량기 전까지는 시장이 수선 공사를 할 수 있다(건축물 내부제외).

**제23조(권리·의무의 승계)**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제24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급수정지 및 사용 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5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 제4장 요금과 수수료

**제26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 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7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금표에 의한 사용요금과 제33조에 의한 구경별 정액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 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때의 요금은 각 가구별(업소포함)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 급수 중지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업종의 구분)** ① 효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의 업종 구 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효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효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 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 수량

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도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의 사용량으로 하되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제32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부로 하고, 납기는 다음달 말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구경별 정액요금)** ①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 4"에 의하여 매월 사용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34조(연체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수도사용자의 동의 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함께 적어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 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 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6조(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시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37조(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 구역에 한정하여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설계수수료는 급수관 구경 25밀리미터까지는 3,000원으로 한다.
2. 급수관 구경 25밀리미터 이상 및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2로 한다.

**제39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보호1종 대상자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단체,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노인회 등의 업종은 가정용으로 하되 10세제곱미터 사용요금에 한하여 전액 감면하고, 국민기초수급자 중 의료보호 2종대상자는 10세제곱미터사용 요금의 5분의2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가구분할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공중위생 등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모범업소로 지정 통보되는 업소의 수도요금은 3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업소 관리부서의 예산으로 업소감면 요금을 지원할 경우 보전할 수 있다.
  3. 제22조제3항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하는 급수장치 중 지하에 매설되어 있어 발견이 곤란한 곳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상 사용 전 4개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요금의 2분의1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와 건축물 내부 및 지상누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초등·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사용하는 수도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한다.
  5.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수도요금의 10퍼센트를 감면한다.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의 대상자에 대한 감면기준 등은 해당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시장이 따로 정하여 감면한다.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의 감면대상,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1. 시장은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2. 시장은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장 관리

**제41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다음 각호와 같이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아연도강관 등 비 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42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시민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예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의 이 조례에 규정한 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7.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8.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9.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0. 본래에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1.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제43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의하

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제45조(과태료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6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47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장 보칙

**제48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9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과태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0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시 설 분 담 금

| 계량기구경별 | 분담금액         | 비 고 |
|--------|--------------|-----|
| 13mm   | 90,000원      |     |
| 20mm   | 280,000원     |     |
| 25mm   | 480,000원     |     |
| 32mm   | 1,000,000원   |     |
| 40mm   | 1,400,000원   |     |
| 50mm   | 2,400,000원   |     |
| 75mm   | 4,800,000원   |     |
| 100mm  | 8,000,000원   |     |
| 150mm  | 18,000,000원  |     |
| 200mm  | 20,000,000원  |     |
| 250mm  | 60,000,000원  |     |
| 300mm  | 78,000,000원  |     |
| 350mm  | 98,000,000원  |     |
| 400mm  | 107,000,000원 |     |

[별표 2]

## 업 종 별 요 금 표

| 업 종 별            | 사 용 요 금 |        | 비 고 |
|------------------|---------|--------|-----|
|                  | 사용량     | 금 액(원) |     |
| 가<br>정<br>용      | 1~10톤   | 톤당 450 |     |
|                  | 11~20   | 560    |     |
|                  | 21~30   | 690    |     |
|                  | 31~40   | 890    |     |
|                  | 41~50   | 1,170  |     |
|                  | 51톤 이상  | 1,440  |     |
| 일<br>반<br>용      | 1~30    | 톤당 790 |     |
|                  | 31~50   | 960    |     |
|                  | 51~100  | 1,210  |     |
|                  | 101~300 | 1,520  |     |
|                  | 301~500 | 1,980  |     |
|                  | 501톤 이상 | 2,430  |     |
| 대<br>중<br>탕<br>용 | 1~200   | 톤당 530 |     |
|                  | 201~300 | 620    |     |
|                  | 301~500 | 810    |     |
|                  | 501톤이상  | 1,030  |     |
| 산<br>업<br>용      | 1~300톤  | 톤당 430 |     |
|                  | 300톤 이상 | 650    |     |

[별표 3]

## 업종구분표

| 업종별  | 업종별                                                                                                                                                                             | 비고 |
|------|---------------------------------------------------------------------------------------------------------------------------------------------------------------------------------|----|
| 가정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li> <li>·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의 소매점등으로서 10㎡미만의 업소</li> <li>·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유공자 단체</li> </ul> |    |
| 일반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li> </ul>                                                                                                          |    |
| 대중탕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대중 목욕장업</li> </ul>                                                                                                                   |    |
| 산업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공단지 내 입주업체</li> </ul>                                                                                                                 |    |

[별표 4]

### 구경별 정액요금

| 구 경 별 | 금 액     |
|-------|---------|
| 13mm  | 400     |
| 20mm  | 1,130   |
| 25mm  | 1,830   |
| 32mm  | 3,200   |
| 40mm  | 5,450   |
| 50mm  | 8,340   |
| 75mm  | 20,650  |
| 100mm | 34,580  |
| 150mm | 75,190  |
| 200mm | 105,960 |
| 250mm | 142,920 |
| 300mm | 172,360 |
| 350mm | 216,960 |
| 400mm | 236,120 |

[별표 5]

## 과태료 및 행정처분기준

| 위 반 내 용                          | 과 태 료                                  |                                | 행 정 처 분                                                                     |
|----------------------------------|----------------------------------------|--------------------------------|-----------------------------------------------------------------------------|
|                                  | 사기, 기타 부정한 수 징<br>단으로 사용요금의<br>수를 면한 자 | 공공시설물을<br>사용한 자                |                                                                             |
| 1. 급수도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br>(단, 가정용은 2배)         | 300,000원                       | ○부정급수설비 철거 명령<br>○부정급수자 및 방조자 고발                                            |
| 2. 승인을 받지 아니<br>한 급수공사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br>(단, 가정용은 2배)         | 300,000원                       | ○부정급수설비 철거 명령<br>○부정공사자, 시공자 및 그 방조자 고발                                     |
| 3. 계량기 작용방해,<br>훼손, 무단철거 및<br>망실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br>(단, 가정용은 2배)         | 200,000원<br>(단, 가정용은 100,000원) | ○계량기 수리 및 구입 설치 명령<br>○명령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
| 4. 계량기 매몰, 공작물<br>설치 및 봉인 파손     |                                        | 100,000원<br>(단, 가정용은 50,000원)  | ○원상회복명령. 단, 봉인 파손의 경우에는<br>그러하지 아니하다.<br>○명령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
| 5. 허가를 받지아니한<br>특수가압 시설          |                                        | 200,000원                       | ○철거 또는 허가절차 이행명령<br>○명령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
| 6. 사설소화전의무단<br>사용 또는 봉인 파손       |                                        | 100,000원<br>(단, 가정용은 50,000원)  | ○과태료를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시는<br>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
| 7. 정수처분 중인 급수<br>전의 무단 개전        | ○징수를 면한 금액의<br>5배                      | 100,000원<br>(단, 가정용은 50,000원)  | ○원상회복명령 3회<br>○명령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급수정지<br>처분                                   |
| 8. 제19조 규정에 의한<br>급수판매 금지위반      |                                        | 100,000원<br>(단, 가정용은 50,000원)  | ○과태료를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시는<br>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
| 9. 업종 위반                         |                                        |                                | ○업종위반일로부터 가산하여 차액추징<br>○업종 직권 변경<br>○추징금을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시는<br>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



## 속초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입법예고

속초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1일

### 속 초 시 장

####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할 경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적법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임기 등을 정함(안 제2조)

다.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내용을 정함(안 제3조)

라. 위원회의 개최, 의무 및 회의의 진행 등을 정함(안 제4~6조)

마. 의견청취, 상정안건 심의, 현지조사 등 산사태취약지역지정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7~11조)

#### 4. 자치법규안 : 붙임

#### 5.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자원조성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217-030/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재난산림관리과 자원조성담당(전화: 033-639-2148, FAX: 033-639-2588)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재난산림관리과 담당 조혁묵(전화:033-639-214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는 속초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임기)** ① 속초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속초시 공무원 중에서 실·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 학과의 대학 조교수 이상 또는 공인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산림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기술사
5. 행정경력 또는 각종 심사·심의 경험이 있는 시민과 해당지역 주민 중 대표성을 갖는 주민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안건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위촉 해제하고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6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차트 등으로 한다.

**제7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 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

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전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8조(상정안전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전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전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수정의결” 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전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 보류”로 한다.
4. 안전을 심의한 결과 안전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현지조사)** 안전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림 재해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이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속초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3년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고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주택법」 제43조 및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거 2013년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01. 10 .

### 속 초 시 장

#### 1. 지원대상

- 대상단지 : 총 124개 단지/21,888세대
  - 10년 미만 단지 : 보안등 전기요금
  - 10년 이상 단지 : 보안등 전기요금, 시설보수

| 구 분   | 계   |        | 10년 미만 |       | 10년 이상 |        |
|-------|-----|--------|--------|-------|--------|--------|
|       | 단지수 | 세대수    | 단지수    | 세대수   | 단지수    | 세대수    |
| 계     | 124 | 21,888 | 18     | 3,676 | 106    | 18,212 |
| 아 파 트 | 70  | 20,322 | 13     | 3,595 | 57     | 16,727 |
| 연립주택  | 54  | 1,566  | 5      | 81    | 49     | 1,485  |

2. 지원금액 : 250백만원 (\* 시설물 유지보수 200, 보안등 전기요금 50)

#### 3. 지원기준

| 총 사업비           | 지원기준          | 비 고                                                    |
|-----------------|---------------|--------------------------------------------------------|
| 1천만원 이하         | 총 사업비× 70/100 | - 보안등 전기요금은 90% 지원함<br>- 개별 단지별로 지원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총 사업비× 60/100 |                                                        |
| 2천만원 초과         | 총 사업비× 50/100 |                                                        |

\* 총사업비 : 지원금액+자부담금액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백만원 이하의 사업은 심의를 거쳐 90%까지 지원할 수 있음

#### 4. 지원항목

가. 경로당 유지보수

나. 단지내 보·차도 등의 유지보수

다.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라.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

마. 주민 안전에 관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시설물

○ 시급히 보수하지 아니하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물

○ 시급히 보수·보강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

○ 기타 입주자 공동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 지원금 수혜대상사업에 대하여는 한번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유사사업에 대하여는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음.

다만, 보조금 지원대상중 보안등의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매년 지원할 수 있음.

바.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사.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 등

## 5. 분야별 지원기준

가. 경로당 유지보수

○ 경로당의 각종 시설물의 보수를 원칙으로 하며 물품의 신규 구입은 제외한다.

나. 단지내 보·차도 등의 유지보수

○ 단지내 보·차도는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는 차도와 보행자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도로를 말한다.

다.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 상·하수도시설은 부분보수비를 지원한다.

○ 하수도의 준설은 단지내 도로에 설치된 하수도에 한한다.

라.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 어린이놀이터는 노후 시설물의 실태를 점검하여 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시 교체를 지원하며 시설물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마.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

○ 보안등은 단지내 도로상에 설치된 보안등의 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의한 추가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보안등의 전기요금

- 보안등 전용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된 공동주택 : 전년도 전기요금의 월별금액의 합계×90%

- 보안등 전용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매년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공급 약관에 정한 가로등(갑)의 금액을 참조 시장이 정하는 보안등 단가금액(월)× 12월× 보안등 등수×90% (※W당 33.9원)

#### 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물

○ 물품구입 및 일상적인 일반운영비

○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가 사용하는 공동주택 내 시설물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가 예상되거나 공동주택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업 등

### 6. 세부추진일정

가. 지원신청서 접수 및 현지조사 : 2013. 3월 10일 한

나.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개최 : 2013. 3월말

다. 공동주택지원대상 결정 통보 : 2013. 4월초

### 7. 지원신청

가. 공동주택지원신청서 제출기간 : 2013년 3월 10일 한

나. 신청자격자

○ 입주자대표회가 구성된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장 및 관리사무소장

공동명의로 신청

-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단지는 사업주체 및 관리사무소장 공동명의로 신청
- 입주자대표회가 구성되지 않은 단지는 입주자가 연명·서명하여 선정한 대표자 2인으로 신청

다. 제출처 :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

라. 신청시 제출서류

- 1) 공동주택관리업무 지원신청서(조례 별지 제1호 서식)
-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입주자 동의서류  
(지원신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제반서류)
- 3) 사업계획서(아래의 사항을 기재함)
  - 가) 공동주택의 명칭과 주소 및 신청인의 성명
  - 나) 사업의 목적과 내용
  - 다)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라) 자기자본 부담액
  - 마) 지원 사업기간
  - 바) 사업비 산출내역서 또는 세부 설계내역서
  - 사) 사업위치가 표시된 아파트단지 도면, 사진 등 관련 서류

8.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및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 033-639-27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